

호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23.11.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으로서 재직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정의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호서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대표자 또는 사외이사(이외 대표이사 포함)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 “창업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에 소속한 전임교원을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본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교내·외에서 벤처기업(중소기업)을 설립 및 설립을 위한 예비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활동”이라 함은 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등기이사, 지분참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지분참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4. “실험실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본교 실험실 안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창업교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창업교원이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이상 소유하여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1조의 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교원의 창업 및 지원관리

제5조(창업대상) 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원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및 기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창업신고) ① 창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호서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7조(겸직신청)에 의거하여 겸직근무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의 겸직 승인을 득한 교원은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사본/기술창업인 경우에 한함/사후 제출 가능) 1부

2. 사업계획서(재정적 기여계획 포함) 1부
3. 실험실 사용 허가원(실험실창업의 경우에 한함) 1부
4.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실험실공장 설치자에 한함) 1부
5.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제7조(창업교원의 겸직) 본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외이사(이외 대표이사) 활동을 위해 겸직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호서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8조(창업기업의 형태) 본 규정 제3조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단, 교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로 창업 시 법인전환 이행확약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승인 및 겸직 허가 취소)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받았거나, 겸직한 창업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 및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고된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3. 본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 및 은닉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 규정이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총장이 창업승인, 겸직 허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창업승인, 겸직이 취소된 교원은 창업기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 중지 및 사업장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교원 지원) 총장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창업을 하는 창업교원에게 실험실공장 설치, 연구실 사용,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자재 이용, 자금지원 알선 등 기타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체결) ① 창업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승인자(교원)는 창업 승인서에 명시된 창업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창업승인자(교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체결의 지연이 불가피할 때에는 협약체결 마감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협약 체결일은 협약체결 마감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기업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① 창업교원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 신고 및 보고) ① 창업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사업자의 법인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③ 창업교원은 승인 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지원 및 연수) 창업교원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대학은 산학협력 자원을 활용하여 행정,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시설물 사용)**
- ① 창업교원이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학 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본 교의 각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산정 및 징수는 각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창업교원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 제반비용 및 관련 절차는 창업보육센터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③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④ 창업교원 및 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은 창업교원에게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식재산권) 창업교원이 개발한 기술활용에 관한 권리는 「호서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대학 재정적 기여

제17조(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창업신고 시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는 창업기업의 지분 10% 이상의 주식 무상증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주식 무상증여가 불가능할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8조(주식 무상증여)**
- ① 주식의 무상증여는 창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당해주식의 주당가치 산정은 액면가로 하며, 자본금은 당해기업 발전기금 산정시점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타 기관 소속과의 공동 창업의 경우, 창업교원이 보유한 지분의 10% 이상을 무상증여 한다.
 - ③ 주식 무상증여 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을 타인에게 영업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이 5억원까지는 양도금액의 3%,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 한다.
 - ④ 주식 무상증여 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이 M&A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병대가(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또는 현금 등의 합병 교부금)의 종류별로 각각 2%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 한다.
 - ⑤ 창업교원은 주식 무상증여분에 대한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당해기업이 주권 미발행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⑥ 연구소 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창업하는 창업교원은 기술지주회사와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주 회사에 주권을 인도할 수 있다.

제19조(주식 무상증여의 면제) 대학은 창업교원이 창업승인일로부터 270일 이전에 당해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주식 무상증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증여 주식 관리 등) ① 산학협력단은 제1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근거로 해당 창업교원 기업의 주주로서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② 산학협력단은 일정 조건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 조건 및 절차는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21조(기술이전의 실시) ① 창업교원은 창업 후 6개월 이내에 「호서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창업 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이전 외 「호서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추가로 기술이전 할 수 있으며, 대학은 기술이전료 수입 발생에 따라 교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주관부서)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호서대학교 기술사업화팀으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규정의 변경) 본 규정은 대학 「규정 등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규정의 일부 실효) ① 본 규정의 일부 조항이 관계 규정의 개폐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도 본 규정의 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규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어 본 규정의 실행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호서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등 상위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규정의 해석)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위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11.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이전 창업교원은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인을 받은 후 위 제11조에 의한 협약을 대학과 체결하여야 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이전 창업교원은 본 규정 제17조에 따른 재정적 기여의 의무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규정 시행 이전에 1회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창업교원은 위 제19조 기술이전의 실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서식 2]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 사 명
(예 비 창 업 자)

1. 창업목적·동기 및 (창업)회사개요

창 업 목 적 , 동 기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예 정) 일		상시 근로자수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소유, 임대)
사 업 장				(소유, 임대)
업 종		주 제 품		
관계회사		자 본 금		

2. 사업화 기술개요

기술·특허 및 제품명				
개 발 기 간		개발 비용	제품화	가(), 부()
개 발 방 법 (공동 출원여부)	단독(), 공동()			
권리자(소유권자)				
발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주소			

3. 기술(제품)용도 및 기능

기술(제품) 용도 및 기능(1)	- 관련 자료 포함 3장 내외로 기술

4. 시장 현황 및 효과

<p>시장현황·규모 및 특성</p>	
<p>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p>	
<p>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품의 핵심기술과 보유여부 포함)</p>	
<p>기술의 파급효과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계획한 제품 포함)</p>	
<p>기대효과 (매출증대,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p>	

5. 향후 추진계획(판매·연구 전략 및 계획 포함)

내 용	년도		년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6. 대학지원분 요청내역

구 분	요 청 내 용
시설사용 면적(m ²)	
비품 등	
연구기자재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	
참여인력 (연구원, 학생등)	
기타	

7. 대학지원에 대한 대학발전 기여 계획서

구 분	요 청 내 용	
발전기부금	주식	
	현금	
재학생취업		
장학금		
기타		

8. 소속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서

대상업무	보완계획
<p>담당하던 필수과목 강의계획</p>	
<p>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계획</p>	
<p>수행중인 연구 과제 계획</p>	

[서식 4] 겸직 동의서

겸 직 동 의 서

1. 겸직자

- 소 속 :
- 직위 및 직명 :
- 성 명 : (한문)
- 주민등록번호 :
- 전 공 분 야 :

2. 겸직내용

- 겸 직 기 관 :
- 직명 및 직급 :
- 겸 직 분 야 :
- 겸 직 기 간 :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부(과)장 : (인)

단과대학장 : (인)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6] 법인전환 이행 협약서

이행협약서

각서인

주 소: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상기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 1조】 본 이행 협약서는 호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8조(창업기업의 형태)를 적용한다.

【제 2조】 제 1조에 의거하여 개인사업자로 창업 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법인사업자 전환을 약속한다.

【제 3조】 상기 각서인은 제 2조를 불이행할 시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소를 제기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기 관:
대 표 자: (인)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7] 주식 증여 계약서

주식 증여 계약서

수증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 이라 한다)은 증여자 ○○○(이하 “을” 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을” 은 “갑” 에게 아래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며 이를 증하기 위해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1. 주식발행회사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4. 증여 주식의 수 :
5. 1주의금액(액면금액) :
6. 증여재산가액 :

【제 2조】 “을” 은 발행회사에 위 주식을 “갑” 에게 증여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조】 본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 과 “을” 이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20XX년 XX월 XX일

계약당사자

“갑”

주 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기 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312-82-10256

대 표 자: 서 원 교 (인)

“을”

주 소: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